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 - 98
----------	-----------

발의연월일 : 2019. 11. .

발의자 : 최동철, 이충숙, 송순효, 이충현
김성한, 송영섭, 신낙형, 이종숙
윤유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1일에서 6월 8일로 변경(제4조제1호)

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제4조제2호)

다. 부칙에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라. 입법예고(2019. 11. 22. ~ 2019. 11. 27):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6월 11일”을 “6월 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월 11일”을 “11월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